

발행인: 서울특별시청 최 병 렬
편집인: 공 보 관 김 우 석
전 화: 731-6111~3
인 쇄: 한국컴퓨터산업(인쇄)주식회사
전 화: 273-8111~3

시 보

차 례

제 1994-380 호	공인폐기·교부및재교부공고	3
제 1994-381 호	시의회부의안건공고	5
제 1994-382 호	시의회부의안건공고	5
제 1994-385 호	소방설비공사업면허취소공고	5
제 1994-386 호	마포토1구역제22지구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를위한공람공고	6
제 1994-389 호	시의회부의안건공고	9

〈이면계속〉

[illegible]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“함께하는 고통분담 함께웃는 밝은내일”

1589

● 구 고 시

제 1994-60 호	도시계획(도로)사업실시계획인가(강동)	9
제 1994-59 호	도시계획(도로)사업실시계획인가(강동)	10
제 1994-56 호	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정정(노원)	11
제 1994-58 호	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정정(노원)	12
제 1994-88 호	도시계획사업(학교증축허가)실시계획변경인가(성북)	12
제 1994-84 호	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(성동)	13
제 1994-50 호	도시계획시설(도로)지적승인(중랑)	13
제 1994-45 호	도시계획시설(학교)변경결정및지적승인(서초)	13
제 1994-85 호	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(성동)	14
제 1994-55 호	도시계획사업(도로)실시계획변경인가(노원)	14
제 1994-61 호	주택건설사업자진폐업신고처리고시(강동)	20

● 구 공 고

제 1994-159 호	도시계획사업(도로)실시계획공람공고(양천)	20
제 1994-184 호	건설업양도인가(용산)	21
제 1994-369 호	도시계획시설(도로·공용의청사·수도)결정및변경결정을위한 공람공고(서초)	21
제 1994-244 호	전문건설업행정처분(영업정지)공고(송파)	22
제 1994-159 호	도시계획사업(도로)완료공고(강동)	22

● 사업소고시

제 1994-121 호	하천점용허가(한강관리사업소)	23
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	----

● 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

제 1994-5 호	공직자재산등록공고	23
------------	-----------	----

● 서울지방경찰청훈령

제 62 호	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미아·가출인처리규칙중개정규칙	25
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

● 서울지방경찰청고시

제 1994-13 호	자동차운전면허시험신체검사신고의료기관운영에관한고시개정	28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

● 인 사 발 령

공 고

●서울특별시공고제1994-380호

공인폐기·교부및재교부공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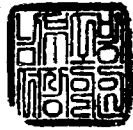
서울특별시공인조례 제8조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“남부소방서장의 인”, “서울특별시남부소방서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 인”, “서울남부소방서계인”, “용산소방서장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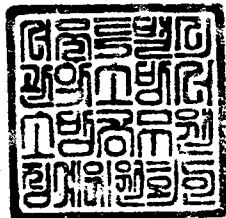
인”을 폐기하고, “관악소방서장의 인”, “서울특별시관악소방서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 인”, “서초소방서장의 인”, “서울특별시서초소방서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인”을 교부하여, “용산소방서장의 인”을 재교부하였기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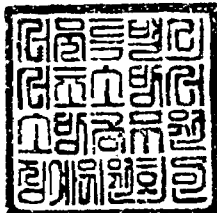
1994. 11. 25

서울특별시장

1. 폐기공인 내역

공 인 명	폐 기 사 유	폐 기 일	폐 기 인 영
남 부 소 방 서 장 의 인	관서명칭 변경	94. 11. 10	
서울특별시남부소방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 인	"	"	
서울남부소방서계인	"	"	

공 인 명	폐 기 사유	폐 기 일	폐 기 인 영
용 산 소 방 서 장 의 인	마 멸	94. 11. 16	
2. 교부 및 재교부 내역			
공 인 명	신조교부사유	사용개시일	신 조 인 영
관 악 소 방 서 장 의 인	관 서 신 설	94. 11. 17	
서 울 특 별 시 관 악 소 방 서 소 방 공 무 원 징 계 위 원 회 인	"	"	
서 초 소 방 서 장 의 인	관 서 명 칭 변경	"	

공 인 명	신조교부사유	사용개시일	신 조 인 영
서울특별시서초소방서소방 공무원징계위원회 인	관서명칭 변경	94. 11. 17	
용산소방서장의 인	마 멸	"	

●서울특별시공고제1994-381호

시의회부의안전공고

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
의회에 부의할 안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

니다.

1994. 11. 25

서울특별시장

구 분	부 의 안 건 명	주관부서
조 례 안 (2 건)	1.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. 서울특별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및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	부녀복지과 세 정 과

●서울특별시공고제1994-382호

시의회부의안전공고

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
의회에 부의할 안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

니다.

1994. 11. 25

서울특별시장

구 분	부 의 안 건 명	주관부서
의 건 청 취 (1 건)	1. 자치구(구로구) 분구에 관한 의견청취	행 정 과

●서울특별시공고제1994-385호

소방설비공사면허취소공고

소방법 제58조제1호 및 제6호, 같은 법

시행규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
비공사면허를 다음과 같이 취소하였기에
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5항의 규정에

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.

1994. 11. 25

서울특별시

상호(영업소재지)	대표자	처분면허(면허번호)	취소일자	취소사유
(주)중원타워 (서초구 서초동 1307-20)	최민섭	공사업 제1종 (기계분야) (제92-74호)	94.11.18	면허기준 시설미달 (소재지불명)
(주)광웅종합건설 (서초구 서초동 1329-4)	이광희	공사업 제1종 (기계분야) (제88-54-48호)	94.11.18	면허기준 시설미달 (소재지불명)

●서울특별시공고제1994-386호

마포로1구역제22지구재개발사업시행변경 인가를위한공람공고

1. 건설부고시 제345호(79. 9. 21)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146호(80. 5. 19)로 사업계획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924호(86. 12. 23)와 같은 고시 제85호(91. 3. 29)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및 변경인가된 마포로 1구역 제22지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롯데건설(주) 대표 이상순으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2.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에 비치하여 사업시행구역내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1994. 11. 25

서울특별시

가. 사업의 명칭: 마포로 1구역 제22지구 재개발사업

나. 주된 사무는 소재지 및 시행자: 서초구 잠원동 50-2 롯데건설(주) 대표 이상순

다. 층수: 지상 25층, 지하 5층(주된 용도: 업무, 판매, 운동, 위락시설)

라. 공람내용(변경내용)

구분	기정	변경	비고
시행기간	86. 12. 23~94. 12. 31	86. 12. 23~99. 12. 31	기간연장
기타	변경 없음		

마. 변경사유

-토지 등의 소유자가 많아 사업협의 지연

-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

바. 공람기간: 94. 11. 19~94. 12. 19(30일간)

사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

아. 공람장소: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

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

가. 토지

번호	지 번	지 목	시 행 면 적			소 유 자		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			비 고
			계	대지	공공용지	주 소	성 명	권리명	주 소	성 명	
1	공덕동 257-8	대	106.8	106.8		서초구 잠원동 50-2	롯데건설(주)				
2	257-10	대	94.5	94.5		서초구 잠원동 50-2	롯데건설(주)				
3	257-17	도로	17.9		17.9	서초구 잠원동 50-2	롯데건설(주)				
4	257-18	도로	50.9		50.9	서초구 잠원동 50-2	롯데건설(주)				
5	257-40	대	13.9	13.9		서초구 잠원동 50-2	롯데건설(주)				
6	257-45	대	42.6	42.6		마포구 공덕동 257-5	조 재 원	근저당	마포구 공덕동 257-45	공 덕 2 동 새 마을 금고	
7	27-47	대	65.8	65.8		서초구 잠원동 50-2	롯데건설(주)				
8	257-51	대	114.7	114.7		서초구 반포동 18-21 주공(A) 242-201	김 기 원	근저당 근저당 근저당	서초구 잠원동 50-2 도봉구 수유동 50-84 인천시 남구 구월동 258 펜더(A) 6-1203	이 흥 근 김 인 자	
9	257-53	대	3.3	3.3		서초구 잠원동 50-2	롯데건설(주)				
10	257-55	대	2.0	2.0		서초구 잠원동 50-2	롯데건설(주)				
11	257-58	대	4.3	4.3		마포구 도화동 544 교려(A) 1305	김 기 원	근저당 근저당 근저당	서초구 잠원동 50-2 도봉구 수유동 50-84 인천시 남구 구월동 258 펜더(A) 6-1203	이 흥 근 김 인 자	
12	257-59	대	51.2	51.2		서초구 잠원동 50-2	롯데건설(주)				
13	394-35	대	106.0	106.0		마포구 공덕동 394-35	석 명 성				

번호	지 번	지목	시 행 면 적			소 유 자		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			비 고
			계	대지	공공용지	주 소	성 명	권리명	주 소	성 명	
14	공덕동 394-39	대	7.0	7.0		마포구 공덕동 394-35	석 명 성				
15	394-50	대	7.0	7.0		서초구 잠원동 50-2	롯데건설(주)				
16	396-3	대	67.0	67.0		광명시 철산동 241 주 공④ 1302-1103	장 덕 채	가처분 가처분	마포구 염리동 139-1 은평구 갈현동 472-13	장 승 일 장 경 봉	
17	396-52	대	158.0	158.0		광명시 철산동 241 주 공④ 1302-1103	장 덕 채	가처분 가처분	마포구 염리동 139-1 은평구 갈현동 472-13	장 승 일 장 경 봉	
18	423-1	대	3.0	3.0		서초구 잠원동 50-2	롯데건설(주)				
19	423-4	대	248.0 53.3 1.9	248.0 53.3 1.9		서초구 잠원동 50-2 강남구 일원동 615-1 한신④ 101-202 마포구 공덕동 434-5	롯데건설(주) 강 영 수 송 수 길				
20	423-6	대	0.3	0.3		서초구 잠원동 50-2	롯데건설(주)	차 압		서울특별시	
21	423-9	대	32.1	32.1		서초구 서초동 1615-1 일성서초빌라 101	송 기 범	근저당 지상권	중구 을지로2가 50	중소기업은행 상계동지점	
22	423-11	대	1.0	1.0		서초구 잠원동 50-2	롯데건설(주)				
23	423-12	대	68.8	68.8		서초구 잠원동 50-2	롯데건설(주)				
24	423-20	대	433.4	433.4		서초구 잠원동 50-2	롯데건설(주)				
25	423-34	대	906.5 195.0 7.1		906.5 195.0 7.1	서초구 잠원동 50-2 강남구 일원동 615-1 한신④ 101-202 마포구 공덕동 434-5	롯데건설(주) 강 영 수 송 수 길				
기 타 변 경 없 음											
나. 건축: 변경 없음											

제 1862 호

시

보

1994. 11. 25

●서울특별시공고제1994-389호 시의회부의안전공고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의회에 부의할 안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		니다. 1994. 11. 25 서울특별시장
구 분	부 의 안 전 명	주 관 부 서
조 례 안 (8 건)	1.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2.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. 서울특별시식품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.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안 5.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.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. 서울특별시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안 8. 서울특별시성수대교사고에따른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안	행 정 과 청 소 사업 본 부 회 계 과 세 정 과 재 산 관 리 과 시 정 개 발 담 당 관 인 사 과 도 로 시 설 과
의 건 청 취 (2 건)	1.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 2. 도시계획(용도지역) 변경결정	도 시 계 획 과 도 시 계 획 과
구 고 시 ●강동구고시제1994-60호 도시계획(도로) 사업실시계획인가 1. 강동구공고 제1994-139호(94. 10. 15)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공람공고한 바 있 는 강동구 천호동 337~천호동 338간 도 시계획시설에 대하여, 2. 도시계획법 제25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 2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강동구청 건설관리과, 토목 과에 비치하고 토지·지장물 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1994. 11. 25 강 동 구 청 장 가. 사업시행지: 강동구 천호동 337-149 ~천호동 337-151 나. 사업명: 천호동 337~천호동 338간		도로개설공사 다. 사업규모 도로개설 폭 6m, 연장 60m 라. 사업시행자: 강동구청장 마. 사업착수 및 준공연월일: 인가일로부터 1995. 12. 31까지 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·건물의 소재 지, 지번·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당해: 별첨 사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 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 주소·성명: 별첨

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(강동구 천호동)

연번	지 번	지목	지적 (㎡)	소 유 자	관 계 인
1	천호동 337-149	대	25.6	강동구 둔촌동 30-4 현대④ 14-801 이정평	
2	337-153	"	11.2	서초구 서초동 1604-3 이인식	중구 남대문로2가 111-1 상업은행(성동지점) 근저당권
3	337-152	"	0.3	강동구 천호동 337-103 구찬희	중구 태평로2가 삼성생명보험(주) 서울서부지점 근저당권
4	337-150	"	25.6	강남구 청담동 134-21 삼익④ 13-601 최제성	
5	337-151	"	28.3	성동구 능동 9-8 조남재	

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 조서(강동구 천호동)

연 번	지 번	지장물	면적(㎡)	소 유 자	비 고
1	천호동 337-120	대 문	1식	서초구 서초동 1604-3 이인식	
2	"	담 장	"	"	

●강동구고시제1994-59호

도시계획(도로)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

1. 강동구공고 제1994-145호(94. 10. 20)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공람공고한 바 있는 강동구 둔촌동 70-25 앞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,
2. 도시계획법 제25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(도로)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3. 관계도서는 강동구청 건설관리과,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·지장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(480-1400~7).

1994. 11. 25

강 동 구 청 장

가. 사업시행지: 강동구 둔촌동 70-25 앞

나. 사업명: 둔촌동 70-25 앞 도로개설공

사

다. 사업규모

도로개설 폭=6m, 연장=20m

라. 사업시행자: 강동구청장

마. 사업착수 및 준공연월일: 인가일로부터 2년간

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·물건의 소재지, 지번·지목,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: 별함

사. 토지 또는 물건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 주소·성명: 별함

토 지 조 서

소재지: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

일련 번호	소재지 지번	지목 (물건의 종류)	지적 (구조및 규격) (㎡)	편입 면적 (㎡) (수량)	실제 이용 상황	소유자관계인					비고
			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권리의종류	
1	70-2	담	15	1		김영철	도봉구 도봉동 30-1 도봉한신④ 113-404				
2	70-25	대	145	70	임덕기	강동구 둔촌동 70-25	김영자	송파구 오금동 127-13	소유권이전 청구권 가 등기		
						서울특별시 강동구 내동 540	성압 (세일 2977)			류세무1과	
						한국주택 은행 (남대문 지점)	중구 태평 로1가 61-1 공담 건물 70-25	근저당권 설정			

●노원구고시제1994-56호

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정정

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, 동법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따라 고시 기재한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1994-28호(94. 6. 17)를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.

1994. 11. 25

노원구청장

1. 사업명: 민영주택건설사업
2. 사업주체
 - 가. 상계1동재건축주택조합 조합장 강의수 외 32인
 - 나. 한신공영(주) 대표 송철호
3. 사업시행지
 - 가. 위치: 노원구 상계동 1013-22 외 44

필지

나. 대지면적: 9,015.26㎡

다. 사업규모: 아파트 2개동, 29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

라. 연면적: 37,157.38㎡

4. 사업시행기간: 94. 6 ~ 96. 10

5. 변경사항: 도시계획시설(도로)변경 및 폐지

(정정전)								
도시계획시설 변경 : 없음								
(정정후)								
연번	구 분	등 급	유 별	폭 원	연 가	기 점	종 점	비 고
1	신 설 소 로		3 류	6m	95m	상계동 1009-2	상계동 1013-25	신 설
2	변 경 소 로		3 류	4m	215m	상계동 1011-33	상계동 997-9	폭원변경

●노원구고시제1994-58호

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정점

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, 동법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따라 고시 게재한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1991-37호(91. 7. 16)를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.

1994. 11. 25
노 원 구 청 장

- 사업명 : 민영주택건설사업
- 사업주체
가. 채신부제8직장주택조합 외 3개조합

조합장 임호영

나. 금호건설(주) 대표 이 승 하

3. 사업시행지
가. 위치 : 노원구 상계동 산 143-4 외 7필지
나. 대지면적 : 7,770.44㎡
다. 사업규모 : 아파트 2개동, 23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
라. 연면적 : 28,974.85㎡

4. 사업시행기간 : 91. 7 ~ 94. 10

5. 변경사항 : 도시계획시설(도로) 변경 및 폐지

(정정전)								
도시계획시설 변경 : 없음								
(정정후)								
연번	구 분	등 급	유 별	폭 원	연 장	기 점	종 점	비 고
1	변 경 중 로		2 류	15m	70m	상계동 산 143-3	상계동 산 142-8	도로모퉁이
2	변 경 소 로		3 류	6m	64m	상계동 134-48	상계동 134-43	폭원변경

●성북구고시제1994-88호

도시계획사업(학교증축허가)실시계획
변경인가

서울특별시 성북구공고 제1994-211호(94. 10. 7)로 도시계획사업(학교) 시행에 따른 공람공고에 대하여 건축법 제8조(도시계획법 제25조)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(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) 처리하고 도시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건축과(920-

3390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임니다.

1994. 11. 25
성 북 구 청 장

- 사업시행지 : 성북구 삼선동2가 389 일대
- 사업의 종류 및 명칭
가. 사업의 종류 : 도시계획사업(학교)
나. 사업의 명칭 : 학교시설 증축
- 사업시행면적
가. 당초 : 26,459.83㎡

- 나. 변경: 29,574.09㎡(중 3,114.26㎡)
4.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
가. 주소: 성북구 삼선동2가 389
나. 성명: 학교법인 한성학원 대표이사 서정희
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: 1994. 11~1994. 12. 31
6. 위치도 및 허가(인가)도면: 성북구청 건축과 비치도면과 같음
7. 사용할 토지: 성북구 삼선동2가 389 일대
8. 토지소유자: 학교법인 한성학원 및 서울특별시

●성동구고시제1994-84호

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

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1994. 11. 25

성 동 구 청 장

1. 사업명: 민영주택 건설사업
2. 사업주체: (주)동진주택 대표 백학기

3. 민영주택 건설사업 개요
가. 위치: 서울 성동구 중곡동 230-12, 17
나. 부지면적: 1,757.40㎡
다. 건축연면적: 7,399.79㎡
라. 규모: 근린생활시설, 아파트 11층 1개동 4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
4. 사업시행기간: 1994. 11~1996. 5
5.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의제사항: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

●중랑구고시제1994-50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-338호(94. 10. 15)로 변경결정된 우리구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과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중랑구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,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94. 11. 25

중 랑 구 청 장

도시계획시설(도로) 지적승인조서

구 모				사용 형태	기능	연장	시점	종점	비 고
등급	유별	번호	폭원						
중	2	165	15	일반 도로	집산 도로	410	목동 294	목동 산 41-2	신내동 산 41-2~산 172-1 L=340m 패지 목동 산 42~산 41-2 L=30m 선형변경 신내동 산 172-1~신내동 (대 2-26) L=570m 택지 개발사업으로 기패지

●서초구고시제1994-45호

도시계획시설(학교)변경결정및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716호(85. 10. 29)로 변경결정된 서초구 영곡동 72 일대 학교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,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, 제7조의3과 같은 법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	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면은 서초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(570-6385~7)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1994. 11. 25 서 초 구 청 장
---	---

가. 도시계획시설(학교)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

구분	시 선 명	위 치	규모(㎡)	비 고
기정	학 교 (언남국민학교)	서초구 영곡동 72 일대	9,441	해제: 354㎡ 추가결정: 17㎡
변경	"	"	10,175	면적정정: 1,071㎡(당초누락)

나. 관계도면: 서초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 비치도면과 같음.

●성동구고시제1994-85호

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

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1994. 11. 25

성 동 구 청 장

1. 사업명: 민영주택 건설사업
2. 사업주체: 성수지구 연합주택조합, 성수1가 재건축조합
3. 민영주택 건설사업 개요
 - 가. 위치: 성동구 성수1가 656-16 외 135필지
 - 나. 부지면적: 22,163.94㎡
 - 다. 건축면적: 87,373.91㎡

가. 사업개요

라. 규모: 아파트 23층 8개동 70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

4. 사업시행기간: 1994. 11~1997. 12
5.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의제사항 :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

●노원구고시제1994-55호

도시계획사업(도로) 실시계획변경인가

1. 노원구공고 제1994-141호(94. 4. 8)로 도시계획사업(도로) 실시계획 공람공고된 중계동 산 6-1~137-14간 외 1개소 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(도로)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.

2. 관계도서는 노원구청 토목과, 주택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소유자,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94. 11. 25

노 원 구 청 장

	사업위치	사업종류 및 명칭	규모	사업기간	비고
당초	노원구 상계5동 중계 4동	중계동 산 6-1~137-14간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	B=6m L=540m	인가일로부터 95. 12. 31까지	
변경	변경없음	변 경 없 음	변경없음	변경없음	

나. 사업시행자: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
다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, 물건의 소재
지 및 지번 및 소유자 이외의 권리명세
: 별첨
라. 토지 또는 물건의 소유자와 토지수용
법 제4조제3항에 의한 이해관계인의
주소·성명: 별첨(세입자 1세대 신규편
입)

토 지 조 서

사업시행자명 : 서울특별시 노원구청

사업시행자주소 : 노원구 상계6동 701-1

사업의 종류 : 중계동 산 6-1~137-14간의 도로개설공사

30-16

연 번	기										변									
	소					관					소					관				
	지	지	지	지	소	지	지	지	지	소	지	지	지	지	소	지	지	지	지	소
	번	번	번	번	유	번	번	번	번	유	번	번	번	번	유	번	번	번	번	유
					자					자					자					자
					성	성	성	성	성	성	성	성	성	성	성	성	성	성	성	성
					명	명	명	명	명	명	명	명	명	명	명	명	명	명	명	명
					주	주	주	주	주	주	주	주	주	주	주	주	주	주	주	주
					소	소	소	소	소	소	소	소	소	소	소	소	소	소	소	소
					소	소	소	소	소	소	소	소	소	소	소	소	소	소	소	소
					유	유	유	유	유	유	유	유	유	유	유	유	유	유	유	유
					권	권	권	권	권	권	권	권	권	권	권	권	권	권	권	권
					리	리	리	리	리	리	리	리	리	리	리	리	리	리	리	리
					내	내	내	내	내	내	내	내	내	내	내	내	내	내	내	내
					용	용	용	용	용	용	용	용	용	용	용	용	용	용	용	용

물 건 조 서

사업시행자명 : 서울특별시 노원구청

사업시행자주소 : 노원구 상계6동 701-1

사업의 종류 : 중계동 산 6-1~137-14간의 도로개설공사

연 번	기 정										변 경										
	소재지 지 번	지 목	구조 및 규격	수량 (㎡)	실제 이용 상황	소 유 자		관 계 인			소재지 지 번	지 목	구조 및 규격	수량 (㎡)	실제 이용 상황	소 유 자		관 계 인			
						성명	주 소	성명	주소	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						성명	주 소	성명	주소	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	
1	상계동 156-228	건 물	기 와 복	41	상가	김영환	노 원 구 상계7동 757	정광철	노 원 구 중 계 동 150-33	세입자											
							한 양 ㉠ 3-606	김용배	노 원 구 중 계 동 150-33	세입자					변	경	없	음			
2	"	"	"	17	"	연순자	노 원 구 중 계 동 150 27 /4(청주 식당)									변	경	없	음		
3	"	"	"	20	"	정춘희	노 원 구 중 계 동 141-7	김교희	노 원 구 중 계 동 150-6	세입자	상계동 156-228	건 물	기 와 복	20	상가	정춘희	노 원 구 중 계 동 141-7	김교희	노 원 구 중 계 동 150-6	세입자 (변경 없음)	
																		이경태	노 원 구 중 계 동 150-23	세입자 (신규 편입)	

부 1862 호

시

부

1994. 11. 25

30-17

연 번	기 정									변 경										
	소재지 지 번	지 목	구조 및 규격	수량 (㎡)	실제 이용 상황	소 유 자		관 계 인			소재지 지 번	지 목	구조 및 규격	수량 (㎡)	실제 이용 상황	소 유 자		관 계 인		
						성명	주 소	성명	주소	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						성명	주 소	성명	주소	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
4	중계동 156-223	건 물	기 와 벽 돌	32	주거	주중선	노 원 구 중 계 동 142-17	박해영	노 원 구 중 계 동 142-17	세입자				변	경	없	음			
5	141-10	전 물	기 와 천 막 불 목 철계대문 화 장 실 및 창 고 지하부위	32	주거	김중석	노 원 구 중 계 동 142-16	백은신	노 원 구 중 계 동 142-16	세입자				변	경	없	음			
								최정숙	노 원 구 중 계 동 142-16	세입자										
6	142-65	기 와 벽 돌	기 와 벽 돌	24	주거	김기두	성 동 구 군 자 동 205 하수 처리사업 소 직원 ㉠ 107	백윤환	노 원 구 중 계 동 142-46	세입자				변	경	없	음			
7	142-67	슬래브 기 와 벽 돌	슬래브 기 와 벽 돌	47	주거 및 상가	신동교 의 4인 상가	강 남 구 역 삼 동 682-1	김창수	노 원 구 중 계 동 142-47	세입자				변	경	없	음			
								김남길	"	"										
								김미자	"	"										

제 1862 호

시

보

1994. 11. 25

제 1862 호

시

보

1994. 11. 25

연 번	기 정										변 경									
	소재지 지 번	지 목	구조 및 규격	수량 (㎡)	실제 이용 상황	소유자		관 제 인			소재지 지 번	지 목	구조 및 규격	수량 (㎡)	실제 이용 상황	소유자		관 제 인		
						성명	주 소	성명	주 소	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						성명	주 소	성명	주 소	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
8	중계동 142-69	건 물	기 와 돌	11	주거 및 상가	김용국	노원구 상계동 685 보합㉠ 102-309	정연희	노원구 중계동 142-48	세입자				변	경	없	음			
9	152-7	슬레이트 불	목	20	상가	서귀성	노원구 중계동 144-6	김기복	노원구 중계4동 ㉠ 204 -808	세입자				변	경	없	음			

30-19

●강동구고시제1994-61호

주택건설사업자진폐업신고처리고시
강동구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
의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

제10조의3 규정에 따라 자진폐업하였기 다
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1994. 11. 25

강 동 구 청 장

등록번호	상 호	대표자	영 업 소 재 지	처분유형	처분일자
91-22-21	대 영 전 설	김 용	강동구 성내동 542-2	자진폐업	94.11.16
92-22-5	합동전설(주)	박재양	강동구 성내동 458	자진폐업	94.11.16

구 공 고

●양천구공고제1994-159호

도시계획사업(도로) 실시계획공람공고
1.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-81호(94. 3. 14)
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양천구고시 제
1994-18호(94. 3. 30)로 지적승인된 우리
구 도시계획사업(도로) 실시계획에 대하여
도시계획법 제2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

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관계도서를 공고
합니다.

2. 토지(건물)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
별 봉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
이 공고로 갈음합니다.

3. 관계도서를 양천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
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을
때에는 공람기간내 공람장소에 서면 제출
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994. 11. 25

양 천 구 청 장

가. 사업개요

사 업 명	시 행 구 간	사업의 종류 및 규모	사 업 기 간
신정2동 295 주변 도로개설공사	신정동 132-5	도시계획사업(도로개설) B=12~15m, L=132m	인가일로부터 2 년

나. 사업시행자: 양천구청장

다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
: 별첨

라. 관계도면: 별첨(생략)

마. 공람기간: 94. 11. 16~94. 11. 29

바. 공람장소: 양천구청 토목과(640-3405
~7)

편 입 토 지 조 서

연번	소 재 지	지목	지적 (㎡)	편입면적 (㎡)	소 유 자	
					주 소	성 명
1	신정동 132-5	구	1,880	1,880		국 (건설부)
2	신정동 129-91	대	57	57	동대문구 이문동 292-61	신 청 호 외 1 인

연번	소재지	지목	지적 (㎡)	편입면적 (㎡)	소유자	
					주 소	성명
3	신정동 129-62	도	31	31	강동구 잠실동 209-15	이태익 외 11인

전 물 조 서

연번	소재지	건물 종류	구 조	편입면적	소유자	
					주 소	성명
1	신정동 132-4	주거용	시멘트조	44㎡	화곡동 29-27	김성중
2	"	"	"	81㎡	신정동 144	조남열
3	"	"	"	62㎡	"	장한갑
4	"	"	"	93㎡	"	안정자
5	"	"	"	47㎡	"	오순선
6	"	"	"	60㎡	"	신성일
7	"	"	"	109㎡	용신구 서계동 33-103	박상식
8	"	"	"	73㎡	신정동 144	김형진
9	"	"	"	128㎡	"	정영자
10	"	"	"	113㎡	"	최귀전

●용산구공고제1994-184호

건설업양도인가

건설업법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
와 같이 건설업 양도인가하였기 같은 법 시

행령 제19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
고합니다.

1994. 11. 25

용 산 구 청 장

인가일자	업종 및 면허번호	양도자			양수자		
		상 호	대표자	소재지	상 호	대표자	소재지
94.11.16	토공사업 전북 02-45 보령그라우팅 92서울-14-61	태왕진 설(주)	최종한	용산구 한강로2가 2-37	종광진 설(주)	김광심	용산구 한강로1가 286

●서초구공고제1994-369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·공용의청사·수도)

결정및변경결정을위한공람공고

1. 우리 구에서 시설코자 하는 도로와 대법
원 및 법무부에서 시설하고 있는 공용의
청사, 도로에 편입되는 수도시설, 신원마을

진입로를 각각 변경결정하고, 양재동 녹지
해제구간의 도로결정 등을 위하여 동 도시
계획(안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의2,
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서울특별시
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주
민의견을 청취코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

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. 2. 본 도시계획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1994. 11. 25	서 초 구 청 장 가. 공람기간: 1994. 11. 18~1994. 12. 2 (14일간) 나. 공람장소: 서초구 도시정비과(570-6385~7)
---	--

1) 도시계획시설(공용의 청사, 수도) 변경결정 조서

구분	시 설 명	위 치	규 모(m ²)	비 고
기정	공용의 청사	서초구 서초동 967 일대	98,550	대검찰청, 대법원 신청사
변경	"	"	100,674.9	(증) 2,124.9m ²
기정	수 도	서초구 서초동 930 일대	49,188	반포 배수지 진입도로
변경	"	"	49,095.2	(감) 92.8m ²

2)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

구분	등급	유별	폭 원	연 장	시 점	종 점	비 고
기정	중로	2류	8~15m	910m	서초동 170-1	반포동 산 83-2	정보사뒀길 일부구간 폭
변경	"	"	"	"	서초동 1749-9	반포동 산 83-2	원확장(B=8m→12m)
기정	소로	"	8m	310m	신원동 298-17	신원동 482-2	현황 도로로 변경
변경	"	"	"	236m	신원동 485-18	신원동 480-18	
신설	소로	1류	10m	10m	양재동 327-1	양재동 349-6	양재동 327-21 일대 녹지 해제구간

3) 관계도면: 공람장소 비치도면과 같음.

●송파구공고제1994-244호

전문건설업행정처분(영업정지)공고
다음 전문건설업체는 건설업법 제17조제

1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를 위반하였기에 건설업법 제50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(영업정지)하고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994. 11. 25

송 파 구 청 장

업종 및 면허번호	상 호	대표자	영업소재지	위반내용	청문결과	행정처분사항
석 공사업 92-서울-04-23	영진상 사(주)	김석동 외 1인	송파구 방이 동 154	건설업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시 행령 제24조 위반	참 석	영업정지 3월 기간: 94.11.19~95.1.18

●강동구공고제1994-159호

도시계획사업(도로) 완료공고

1. 강동구고시 제1994-12호, 제1994-51호로
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된 천호동

282~391간 도로개설공사가 완료되었기
도시계획법 제85조 및 도시계획법시행령
제66조의3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
다.

2. 관계도서는 강동구청 건설관리과 및 토목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(480-1400~7).

1994. 11. 25

강 동 구 청 장

가. 사업명: 천호동 282~391간 도로개설 공사

나. 사업시행자: 천호동 391-47~392-1

다. 사업시행자: 강동구청장

라. 사업개요: 도로개설 B=6m, L=80m

마. 사업기간: 94. 2. 25~94. 11

사업소고시

●한강관리사업소고시

제1994-121호

하천점용허가

하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

1994. 11. 25

한강관리사업소장

허가 연월일	위 치	지목	점용면적	점 용 목 적	점용기간	허가받은 자	
						주 소	성 명
1994 11.16	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45-24 선 (한강)	하천	205.8㎡ (3m × 6m × 6동, 2.4m × 8.15m × 5동)	강변도시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이동식 사무실 및 창고	94.11.19 ~ 95.11.18	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45-24	현대건설(주) 4공구 소장 백 종 섭

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

●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

제1994-5호

공직자재산등록공고

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등록재산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
1994. 11. 25

공직자윤리위원회

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

①소속	서울특별시	②직위	지방공사강남병원장	③성명	김근우
④본인판의 관계	⑤재산의 종류	⑥소재지·면적등 권리명세		⑦가액 (천원)	⑧비고
본인	임야	경북 영덕군 영해면 산 98 30,942㎡ 강원도 원주군 부론면 법천리 산 89 153,620㎡ 강원도 원성군 홍업면 사제리 산 1-1 94,116㎡		3,043 56,839 70,587	공유(1/2)

④ 본인관의 관 계	⑤ 재산의 종 류	⑥ 소재지·면적등 권리명세	⑦ 가 액 (천원)	⑧ 비 고
본 인	아 파 트	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-1 한신3차④ 26-303 70.74㎡(45평형)	232,000	
	주 택 의 원 사 무 실 예 금	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778-6 전물 754.05㎡ 외환은행 중소기업은행 서울신탁은행	109,972 76,040 8,100 80,000	전물분만 소유
	채 무	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-1 한신3차④ 26-303 전세보증금	△130,000	
소 계			506,581	
배 우 자 임 야		강원도 원성군 홍업면 사제리 산 1-2 45,620㎡ 강원도 원주군 부론면 법천리 산 89 153,620㎡ 강원도 원성군 홍업면 사제리 산 8 15,967㎡	26,915 56,839 9,739	공유(1/2)
	단독주택	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394-2 대지 277㎡ 건물 66.35㎡	281,277	
	주 택 의 원 사 무 실 자 동 차 예 금	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778-6 대지 604㎡ 89년식 로얄살롱 2.0MT(배기량 1979cc) (취득가액 15,431천원) 외환은행 주택은행 동방생명보험	972,440 63,917 5,000 5,173	토지분만 소유
	회 원 권	쌍용양회공업(주) 콘도미니엄	27,000	
소 계			1,451,300	
모	아 파 트	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6-4 금호④ 나-403 17.41㎡(34평형)	104,000	
소 계			104,000	
장 남 예 금		중소기업은행 서울신탁은행	5,248 20,000	
소 계			25,248	
장 녀 예 금		중소기업은행 서울신탁은행	1,900 20,000	
소 계			21,900	
총 계			2,109,029	

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

(퇴직자)

① 소 속	서울특별시	② 직 위	지방공사가강남병원장	③ 성 명	신 현 탁
④ 본인관의 관 계	⑤ 재산의 종 류	⑥ 소재지·면적등 권리명세		⑦ 가 액 (천원)	⑧ 변동사유
본 인	예 금	외환은행(25) 상업은행(1,247) 동양투자금융(6,208) 상업은행(10,850) 예금증가 국민은행 예금감소		18,330 △ 118	신탁금결산이자 이자증식 급여 및 연금
소 계				18,212	
배 우 자	예 금	상업은행(157) 신한은행(4,956) 예금증가 신탁은행 예금감소		5,113 △ 831	신탁이익 가계지출
소 계				4,282	
장 남	예 금	한국은행 예금증가		1,092	신탁이익
소 계				1,092	
총 계				23,856	

(퇴직자)

① 소 속	서울특별시	② 직 위	시 장	③ 성 명	이 원 종
④ 본인관의 관 계	⑤ 재산의 종 류	⑥ 소재지·면적등 권리명세		⑦ 가 액 (천원)	⑧ 변동사유
		변동사항 없음			

서울지방경찰청훈령

●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훈령
제62호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미아·가출인처리
규칙중개정규칙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미아·가출인 처리
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1994. 11. 25

지방경찰청장

제3조제3항 내지 제6항을 다음과 같이한다.

③제2항의 신고를 수리한 경찰서장(이하
“서장”이라 한다)은 범죄와 관련여부를
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.

④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해 신고를 수리한 때는 전산입력 후 지체없이 관할서장에게 이첩하여야 한다.

⑤파출소장은 제2항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 후 즉시 서장에게 보고하고 전산입력 수배하여야 한다.

⑥신고를 수리한 서장은 민원인에게 그 수배결과를 7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하여야 한다.

제4조제4호 “병행수배”를 “일반수배”로 하고, “다목”을 삭제한다.

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발생신고를 수리한 경찰서장은 가출동기 등 정황이 불명확할 때에는 방범과장 및 형사·소년계장 등으로 구성, 운영되는 합심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죄와 관련되었다고 판단하였을 때 즉시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.

제7조제1항 중 제3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수배자의 소재가 확인되었을 때
4. 가출인의 경우 3년이 경과되어도 소재가 발견되지 않을 때, 다만 필요시는 재 수배를 실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—(개정사유 및 주요골자)—

1. 개정사유

경찰청예규 제133호(미아·가출인 수배규칙)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훈령개정

2. 주요골자

○ 제4조제4호 “병행수배”를 “일반수배”로 조정

다목 “전국 및 연고지 등에 수배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”조항 삭제

○ 제5조 중

발생 신고를 수리한 경찰서장은 가출동기 등 정황이 불명확할 때는 방범과장 및 형사, 소년계장 등으로 운영되는 합심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범죄와 관련되었다고 판단하였을 때 즉시 수사 개시

○ 제7조제1항 제4호 신설

가출인의 경우 3년이 경과되어도 소재가 발견되지 않을 때, 다만 필요시는 재 수배 실시 조항신설

신 구 문 대 조 표

현	행	개	정
제3조(신고의 수리)	제3조(신고의 수리)	제3조(신고의 수리)	제3조(신고의 수리)
①생략	①생략	①좌동	①좌동
②생략	②생략	②좌동	②좌동
③제2항의 신고를 수리한 경찰서장(이하 서장이라 한다)은 범죄와 관련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동 항의 단서규정에 의해 신고를 수리한 때는 전산입력 후 지체없이 관할서장에게 이첩하여야 한다.	③제2항의 신고를 수리한 경찰서장(이하 서장이라 한다)은 범죄와 관련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동 항의 단서규정에 의해 신고를 수리한 때는 전산입력 후 지체없이 관할서장에게 이첩하여야 한다.	③제2항의 신고를 수리한 경찰서장(이하 서장이라 한다)은 범죄와 관련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.	③제2항의 신고를 수리한 경찰서장(이하 서장이라 한다)은 범죄와 관련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.

현행	개정
④과출소장은 제2항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 후 즉시 서장에게 보고하고 전산입력 수배하여야 한다. ⑤신고를 수리한 서장은 민원인에게 그 수배결과를 7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하여야 한다. 제4조(수배 및 처리요령) 4. 병행수배 가. 생략 나. 생략 다. 기타 특별히 전국 및 연고지 등에 수배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제5조(수사 활동) ①발생신고를 수리한 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. 1. 신고내용이 범죄와 관련되었다고 판단될 때 2. 수배 후 5일이 경과하여도 소재지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 제7조(수배해제) ①수배서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배해제 입력조치를 하여야 한다. 1. 보호자로부터 수배자가 발견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2. 보호자의 해제요청이 있을 때 3. 기타 수배자의 소재가 확인되었을 때	④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해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전산입력 후 지체없이 관할서장에게 이첩하여야 한다(신설). ⑤과출소장은 제2항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 후 즉시 서장에게 보고하고 전산입력 수배하여야 한다. ⑥신고를 수리한 서장은 민원인에게 그 수배결과를 7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하여야 한다. 제4조(수배 및 처리요령) 4. 일반수배 가. 좌 등 나. 좌 등 다. 삭제 제5조(수사활동) ①발생신고를 수리한 경찰서장은 가출동기 등 정황이 불명확할 때는 방법과장 및 형사, 소년계장 등으로 구성 운영되는 합심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죄와 관련되었다고 판단하였을 때 즉시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. 1. 삭제 2. 삭제 제7조(수배해제) ①좌 등 1. 좌 등 2. 좌 등 3. 좌 등 4. 가출인의 경우 3년이 경과되어도 소재가 발견되지 않을 때, 다만 필요시는 재수배를 실시한다.

서울지방경찰청고시

●지방경찰청고시제1994-13호

자동차운전면허시험신체검사신고

의료기관운영에관한고시개정

도로교통법 제104조 및 동법시행령 제49

조의 위임규정에 의거 운전면허 적성검사
신고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
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1994. 11. 25

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

자동차운전면허 신체검사 신고의료기관
중 승인번호 11-42, 44, 53을 각각 다음과
같이 한다.

승인번호	병 원 명	의사면허번호	소 재 지	전화번호	신고일
		의 사 성 명			
11-42	이원스포타임의원	459	서초구 양재동 24	3461-0181	94.
		김 승 훈			
11-44	영 락 병 원	834	중구 서동2가 61-7	272-9211	94.
		유 시 옥			
11-53	서 부 중 앙 의 원	36224	중구 중림동 28-3	362-0063	94.
		박 창 주			

부 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인 사 발 령

별정직공무원 의원면직

●1994년 11월 16일자

영 제542호

연번	성 명	발 령 내 용	현 직	
			부 서	직 급
1	양 부 원 461222-1*****	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	서울지방경찰청 (교통관리과)	지방별정직 6급 상당 (전 산)

서울특별시장

6급 공무원 파견 및 해제				
●1994년 11월 17일자			영 제543호	
연번	성명	발령내용	현직	
			부서	직급
1	이재덕	내무국(정부합동민원실 파견) (94. 11. 17 ~ 96. 11. 16)	행정과	지방행정 주사
2	이경열	"	국채교류과	"
3	송영추	"	사회과	"
4	조관호	정부합동민원실 파견해제 (93. 6. 23 ~ 현 재)	내무국	"
5	김명찬	" (93. 10. 18 ~ 현 재)	"	"
6	조추연	" (94. 7. 11 ~ 현 재)	"	"
서울특별시				
별정직공무원 의원면직				
●1994년 11월 17일자			영 제544호	
연번	성명	발령내용	현직	
			부서	직급
1	박영석	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	비상계획과	지방별정직 6급상당 (비상대비인력)
서울특별시				
인사발령 통지				
●1994년 11월 17일자			영 제545호	
박홍식(朴洪植)			1994. 11. 12 대통령령	
서울특별시 비서관(4급상당)에 임함				
박영석(朴暎錫)			1994. 11. 17 대통령령	
5급상당에 임함				
서울특별시 민방위국 비상계획과(운영담당) 근무를 명함			1994. 11. 17 대통령령	
서울특별시				

2급이하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				
●1994년 11월 11일자			영 제546호	
연번	성명	발령내용	현직	
			부서	직급
1	이 신 영	94. 10. 27자 국가공무원법 제 73조의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를 동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로 변경처분함	내무국	시설이사관
2	양 영 규	"	"	시설서기관
3	김 재 석	94. 10. 27자 지방공무원법 제 65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를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로 변경처분함	"	지방시설 부이사관
4	여 용 원	"	"	지방시설 서기관
5	권 문 현	"	"	지방토목 사무관
6	김 항 오	"	"	"
7	나 석 근	"	"	지방토목 주사
8	이 남 구	"	"	지방토목 주사보
9	정 명 근	"	"	지방토목 서기
10	김 성 구	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 내무국 근무를 명함	동부건설사업소	지방토목 주사
11	박 윤 기	"	"	지방토목 주사보
서울특별시				
기술직 7급 공무원 전보				
●1994년 11월 18일자			형 제40호	
연번	성명	발령내용	현직	
			부서	직급
1	이 병 래 521002-1*****	양묘사업부 양묘과 근무를 명함	시험연구과	지방임업 주사보
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				